

 LGMMA(주) 여수공장 (555-805) 전남 여수시 중흥동 762-6 전화 : (061) 805 - 3810 Fax : (061) 805 - 3858	물질안전보건자료		제정일자	2020-02-25
	(Material Safety Data Sheet)		() 차	-
	제 품 명 : PR700		개정일자	-
	CAS No. : 51998-22-2		개정항목	-

1.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- 가. 제품명(물질명) : PR700
- 나.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:
- 권고용도 : PMMA용 충격보강제
 - 사용상의 제한 : 자료없음
- 다. 제조자/공급자/유통업자 정보 :
- 회사명 : LG MMA(주)
 - 주소 : 전남 여수시 산단중앙로 497
 - 담당부서 : PMMA2 생산팀
 - 전화번호 : 061-805-3979
 - FAX : 061-805-3988
 - 정보제공서비스 또는 긴급연락 전화번호 : 061-805-3979

2. 유해성·위험성

- 가. 유해성·위험성 분류 :
- 해당없음
- 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:

<input type="radio"/> 그림문자	<input type="radio"/> 신호어	<input type="radio"/> 유해·위험 문구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예방조치문구

예방	해당없음
대응	해당없음
저장	해당없음
폐기	해당없음

- 다. 유해성·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·위험성 :
- 자료없음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	CAS 번호/식별번호	함유량(%)
-------	-----	-------------	--------

2-Propenoic acid, 2-methyl-, methyl ester, polymer with butyl 2-propenoate, ethenylbenzene and methyl 2-propenoate	자료없음	51998-22-2 / -	100
--	------	----------------	-----

4. 응급조치요령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 :

- 눈을 문지르지 마시오.
-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씻어내시오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 :

-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.
- 오염된 피부는 재사용 전에 (충분히) 세탁하십시오

다. 흡입했을 때 :

- 다량의 증기나 미스트에 노출되었을 경우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십시오.
- 필요에 따른 조치를 취하십시오.

라. 먹었을 때 :

- 구토를 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의 조언을 받으시오.
- 즉시 물로 입을 씻어내시오.

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:

- 오염상황을 의료관계자에게 알려 그들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.

5. 폭발·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적절한 (및 부적절한) 소화제 :

- 적절한 소화제 : 분말소화제, 이산화탄소, 일반 포말소화제, 분무
- 부적절한 소화제 : 직사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십시오.
- 화재 진압 시 방화복, 소방용 구조헬멧, 소방용 안전화, 소방용 안전장갑,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십시오.

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:

- 자료없음

다. 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:

- 대규모 화재인 경우 무인방수장치를 활용하며, 여의치 않을 경우 물러나서 타도록 내버려 두시오.
- 물질 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하십시오.
- 탱크가 화염에 휩싸였을 경우에는 접근하지 마시오.
- 주변 환경에 적합한 진화 방법을 찾아 사용하십시오.
- 필요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십시오.
- 화재가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물을 분무하여 용기를 식히시오.
-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을 금지하십시오.
- 화재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소리가 나거나 탱크가 변색되는 경우에는 즉시 대피할 것.

6.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:

- 작업자는 적절한 보호구(『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』항 참조)를 착용하여, 눈 피부에의 접촉과 흡입을 피할 것.
-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. 작업자가 위험 없이 누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면 중단시키시오.
-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십시오.
-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마시오.
- 보호구를 착용한 후 손상된 용기 또는 누출된 물질을 처리하십시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:

- 누출물이 하수시설, 수계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시오.
- 누출량이 많은 경우 119나 환경부, 지방환경관리청, 시·도(환경지도과)에 신고하십시오.

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 :

- 다량누출 : 저지대를 피하고 바람과 반대방향에 있도록 하시오. 누출물질의 처리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여 관리하십시오.
-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십시오.
- 폐기물관리법(환경부)에 의해 처리하십시오.
-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십시오.
- 작은 고체상 유출 :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하십시오.
- 누출된 물질은 적당한 용기에 넣어 담고 오염된 장소를 청소하십시오.

7. 취급 및 저장 방법

가. 안전취급요령 :

-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피하십시오.
-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(증기, 액체, 고체)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, 라벨 예방조치를 따르시오.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십시오.
-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만 취급하십시오.
-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입수하십시오.
- MSDS '8. 누출방지 및 개인보호구' 항을 참조하십시오.
- 정전기 방지화 및 정전기 방지복을 착용하십시오.

나. 안전한 저장 방법 :

-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마시오.
-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하십시오.
- 용기에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.
- 피해야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십시오.
- 정전기를 방지하고 보일러 등의 열원근처나 가연물 주위는 피해서 보관하십시오.
- 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.
- 직사광선을 피하십시오.
-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밀폐하여 보관하십시오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:

- 국내노출기준 : 해당없음
- ACGIH 규정 : 해당없음
- 생물학적 노출기준 : 해당없음

나. 적절한 공학적 관리 :

- 가스, 증기, 미스트, 흠 또는 분진이 발산되는 작업장에 대하여는 공기 중에 이들 함유농도가 보건상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기를 권장함

다. 개인 보호구 :

○ 호흡기 보호 :

- 호흡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 분류됨.
- 사용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하십시오.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방진 마스크를 착용할 것.
- 분진, 미스트, 흠용 호흡보호구
- 공기여과식 호흡보호구(고효율 미립자 여과재)
-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(분진, 미스트, 흠용 여과재)
- 고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
-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: 송기마스크(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), 공기호흡기(전면형)

○ 눈 보호 :
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것.
-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(샤워식)를 설치하십시오.

○ 손보호 :
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안전 장갑을 착용할 것.

○ 신체보호 :

- 해당물질에 직접적인 노출 또는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것.

9. 물리화학적 특성

가. 외관 : 무색 고체(펠렛)

나. 냄새 : 자료없음

다. 냄새역치 : 자료없음

라. pH : 자료없음

마. 녹는점/어는점 : 해당없음

바.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: 해당없음

사. 인화점 : 자료없음

아. 증발 속도 : 해당없음

- 자. 인화성 (고체, 기체) : 자료없음
- 차.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/하한 : 자료없음
- 카. 증기압 : 해당없음
- 타. 용해도 : 자료없음
- 파. 증기밀도 : 해당없음
- 하. 비중 : 1.0 ~ 1.2
- 거. n-옥탄올/물분배계수 : 해당없음
- 너. 자연발화온도 : 450 ~ 480 °C
- 더. 분해온도 : 자료없음
- 러. 점도 : 해당없음
- 머. 분자량 : 자료없음

10. 안전성 및 반응성

- 가.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:
 - 권장된 보관과 취급시 안정함.
 - 유해중합반응을 일으키지 않음.
- 나. 피해야 할 조건 :
 - 혼합금지 물질 및 조건을 피하십시오.
 - 정전기의 축적, 가열, 화염 및 뜨거운 표면을 피하십시오.
- 다. 피해야 할 물질 :
 - 자료없음
- 라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:
 - 화재 시 인화성 가스가 방출될 수 있음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- 가.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:
 - 호흡기를 통한 흡입 : 자료없음
 - 입을 통한 섭취 : 자료없음
 - 피부 접촉 : 자료없음
 - 눈 접촉 : 자료없음
- 나. 건강 유해성 정보 :
 - 급성 독성 :
 - 경구 독성 : 자료없음
 - 경피 독성 : 자료없음
 - 흡입 독성 : 자료없음
 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: 자료없음
 -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: 자료없음
 - 호흡기 과민성 : 자료없음
 - 피부 과민성 : 자료없음

- 발암성 :
 -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: 해당없음
 - IARC : 해당없음
 - OSHA : 해당없음
 - ACGIH : 해당없음
 - NTP : 해당없음
 - EU CLP : 해당없음
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자료없음
- 생식독성 : 자료없음
- 특정 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 : 자료없음
- 특정 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 : 자료없음
- 흡인 유해성 : 자료없음
- 고용노동부고시 :
 - 발암성 : 해당없음
 - 생식세포 변이원성 : 해당없음
 - 생식독성 : 해당없음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 생태 독성 :

- 어류 : 자료없음
- 갑각류 : 자료없음
- 조류 : 자료없음

나. 잔류성 및 분해성 :

- 잔류성 : : 자료없음
- 분해성 : 자료없음

다. 생물 농축성 : 자료 없음

- 생물 농축성 : 자료없음
- 생분해성 : 자료없음

라. 토양 이동성 : 자료없음

마. 오존층 유해성 : 자료없음

바. 기타 유해 영향 : 자료없음

13. 폐기 시 주의사항

가. 폐기방법 :

- 2종류이상의 지정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감량화 안정화 처리할 수 있음.
-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 처리할 것.
- 소각 처리할 것.

- 소각하십시오.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·절단 또는 용융한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십시오.

나. 폐기시 주의사항 :

-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(사업장폐기물배출자)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, 폐기물처리업자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생처리 하는 자,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함.

- 폐기물관리법상 규정을 준수할 것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유엔번호(IMDG CODE/IATA DGR) : 해당없음

나. 유엔 적정 선적명 : 해당없음

다.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: 해당없음

라. 용기등급(IMDG CODE/IATA DGR) : 해당없음

마. 해양오염물질 : 해당없음

바.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:

-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
-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
-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자료없음
-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: 자료없음

15. 법적 규제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

- 작업환경측정물질 : 해당없음
- 노출기준설정물질 : 해당없음
- 관리대상유해물질 : 해당없음
-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: 해당없음
- 제조등금지물질 : 해당없음
- 허가대상물질 : 해당없음
- PSM대상물질 : 해당없음

나.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:

-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: 해당없음
- 중점관리물질 : 해당없음
- CMR(발암성, 생식세포변이원성, 생식독성) 및 CMR 우려 물질 : 해당없음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- 유독물질 : 해당없음
- 배출량조사대상화학물질 : 해당없음
- 사고대비물질 : 해당없음
- 제한물질 : 해당없음
- 허가물질 : 해당없음
- 금지물질 : 해당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-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음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

- 본 제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[별표1]에 의해 지정폐기물(폐합성고분자화합물)에 해당됨.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

-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: 해당없음
- EU 분류 정보
 - 확정분류 결과 : 해당없음
- 미국 관리 정보
 - OSHA 규정(29CFR1910.119) : 해당없음
 - CERCLA 103 규정 (40CFR302.4) : 해당없음
 - EPCRA 302 규정 (40CFR355.30) : 해당없음
 - EPCRA 304 규정 (40CFR355.40) : 해당없음
 - EPCRA 313 규정 (40CFR372.65) : 해당없음
- 로테르담 협약 물질 : 해당없음
- 스톡홀름 협약 물질 : 해당없음
-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: 해당없음

16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 :

-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-19호(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등에 관한 기준)에 근거하여 국내 관련 규제 법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.
- 본 MSDS는 KOSHA, NITE, ESIS, NLM, SIDS, IPCS, NCIS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음.

나. 최초 작성일자 :

- 2020년 2월 25일

다.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:

- 해당없음

라. 기타 :

- 이 정보는 근로자 건강, 환경, 안전을 보호하고자, 현재 가용할 수 있는 DB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음.